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2014. 9

세 법 연 구 센 터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 세 준 초빙전문위원

공동연구원

김 준 현 공인회계사

정 훈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배경	11
1. 금융비용과 관련된 세무상 논점	11
가. 법인세법상 금융비용의 손금산입과 기업의 부채사용 유인	11
나. 금융비용과 국제조세	14
2. 국내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17
가.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17
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 세제	20
3. 국외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논의	21
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21
나. 국제조세협회(IFA) 브뤼셀 세미나(2008)	26
다. 암스테르담 조세법센터의 세미나	30
라.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적용과 관련된 OECD 논의	32
4. 금융비용 공제 제한제도의 주요 사안	36
III. 국외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	38
1. 영국	38
2. 독일	41
3. 이탈리아	43
4. 일본	45
가. 부채규모 기준 제한	45

나. 손익 기준 이자비용 제한제도	46
5. 프랑스	48
가.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제한- 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기준 이자비용 공제 제한	48
나. 이자비용 일괄공제 한도	50
6. 캐나다	50
7. 미국	52
8. 덴마크	53
9. 네덜란드	55
10. 뉴질랜드	56
11. 호주	57
12. 중국	59
13. 각 국가 간 금융비용 제한제도 비교	60
가. 개괄	60
나.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61
다.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63
IV. 시사점	65
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들의 특성 및 장·단점 고려	65
가. 손익기준 제한방식 및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과의 비교	65
나.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의 보완 고려	66
2. 세이프하버룰 및 완충장치의 보완	69
가. 세이프하버룰로서 전세계 부채비율의 도입	70
나. 현행 세이프하버룰인 동종업 부채비율의 유지	72
다. 한도초과의 이월 공제 적용	72
3.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의 다양한 조합 고려	73
4. 금융비용 공제 제한 대상의 확장 고려	74
가. 해외투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74

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비용 공제 제한 적용.....	76
5. 지분 투자 등 대체적 투자 수단에 대한 세제와의 관계 고려.....	77
참고문헌.....	79

표 목 차

〈표 II-1〉 주요 국가들의 FDI 비율 비교(2012).....	15
〈표 II-2〉 각국의 과소자본세제(2008)	29
〈표 III-1〉 주요국의 비교 요약.....	60
〈표 III-2〉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62
〈표 III-3〉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64
〈표 IV-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 간 장 · 단점 비교.....	66
〈표 IV-2〉 부채규모 제한의 세부방식 간 장 · 단점 비교.....	67
〈표 IV-3〉 2013년 기준 부채비율 300%을 초과하는 산업.....	69
〈표 IV-4〉 전세계그룹 비율을 적용하는 국가.....	70

그림목차

[그림 Ⅱ-1]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2011)	16
[그림 Ⅱ-2] 차입매수	24
[그림 Ⅳ-1] 법인세율과 부채사용을 통한 조세회피	75

I. 서론

-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제거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경제에 대한 폐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추세임
- 이러한 조세회피 관련 이슈들 중 다국적기업 등이 이자비용을 통해 고세율국에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OECD는 BEPS Action Plan에서와 같이 금융비용 관련 조세회피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이자비용 공제 인정 규모의 문제
 - 관계사 간 이자율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
 - Hybrid 등 이자비용 성격 구분에 대한 문제
- 국제조세협회(IFA) 회의에서도 금융비용 공제 제한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자비용을 통한 조세회피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부채-자본 비율에 근거한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여 다국적기업 간의 금융비용 과다 공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과소자본세제 등 금융비용 공제 규모 제한 관련 사안을 위주로,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들의 금융비용 공제 제한에 대한 세제를 비교, 검토

하고 각 제도의 특징을 분석함

- 이자비용 관련 조세 쟁점들 중 이전가격 및 이자비용의 성격 구분 문제 등은 이자비용 공제와 직접 관련되기보다는 별도의 조세회피 이슈 사안들과 연계되는 사안임
- 검토 범위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공제 관련 조세회피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제 허용 규모 관련 문제를 위주로 검토함

□ 본 보고서는 금융비용 공제제도 배경에 대한 제Ⅱ장부터 시사점을 제시한 제Ⅳ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금융비용 공제 제한제도 등에 대해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주요국(미국, 영국 등 12개국)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개요 및 관련 요건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
- 제Ⅳ장에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Ⅱ.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배경

1. 금융비용과 관련된 세무상 논점

- 금융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유인은 법인세 체계하에서 부채 사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와 각 국가 간 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해 고세율국에서의 부채 과다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음

가. 법인세법상 금융비용의 손금산입과 기업의 부채사용 유인

- 현행 법인세체계하에서는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효과로 인해 부채사용에 대한 유인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자본구조이론인 M. Miller와 F. Modigliani(이하 'MM')의 1963년 연구와 이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이 존재

1) MM 수정이론(1963)

- 기업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 재무 전략을 수립·실행하며 이러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적자본구조를 구성하며 법인세는 이러한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법인세와 최적자본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MM의 1963년 연구로 일반적으로 MM수정이론이라고 불림
 - － 기업들은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부채의 법인세 절감효과에 의해 부채로 모든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최적자본구조라고 주장함

-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게 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임
 - 미래현금흐름은 영업활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부분은 자본구조와는 관계가 없음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이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임
 -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주주와 채권자의 요구수익률을 조달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익률인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분모가 낮아지므로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어 이를 최소로 하는 수준에서 자본구조를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자본과 부채의 비율이 최적자본구조임
- MM은 자본구조 무관론 이론에 법인세를 고려한 수정이론(1963)에서 기업의 부채사용에 따른 세금절감액의 현재가치만큼 양(+)의 세금효과가 존재하게 되어 모든 자본을 부채로 조달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함을 주장¹⁾
 - 따라서 MM의 수정이론에 의할 경우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금융상품 발행 시 자본보다는 부채로의 분류를 더 선호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함
 - 이는 법인세 과세 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에 의한 것임
- MM의 수정이론에 따라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
 - 국내에서 세금변수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침²⁾

1) MM이론은 법인의 주주는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고 개인은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법인의 부채와 개인의 부채가 완전히 대체가능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차익거래에 있어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기업이나 개인의 차입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 파산비용,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요인을 무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M. Miller는 1977년 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부채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상쇄되어 최적자본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균형부채이론’을 주장하였다(김영규 · 감형규 · 신용재, 『고급재무관리』, 박영사, 2007년, p. 307.).

2) 고종권,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2003년 3월, p. 75.

-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³⁾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하며 수익성과 영업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를 많이 사용⁴⁾
 - 비금융기관은 한계세율 1% 증가 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평균적으로 0.2%point가 증가⁵⁾
- 실증분석은 비록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조세가 기업의 자본구조, 특히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확함

2) 파산위험과 특수관계자

- 현실에서 모든 자금조달을 법인세 절감효과가 존재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파산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임
- 기업이 부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조달을 부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
 - 대출자 입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음
- 그러나 차입자를 지배하는 특수관계자는 파산위험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부채를 사용할 수 있음
- 차입자인 기업과 대출자인 특수관계자 간에 부채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 등의 조정이 가능함

3) 신승모,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05년 9월, p. 28.

4) 전규안, 「조세와 자본구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4년, p. 229.

5) Jost Heckemeyer & Ruud De Mooij, "Taxation and Corporate Debt: Are Banks any Different?," *IMF Working Paper* 13/221, October 2013, p. 4.

- 따라서 금융비용의 과다공제 제한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

나. 금융비용과 국제조세

-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제거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내국 세법과 국제 조세 규범 간의 불일치(비대칭)를 활용하여 세무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래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경제활동이 실제 수행되는 국가로부터 인위적으로 과세이익을 이전·분리시키는 현상이 다수 나타남
 - 이러한 잠재적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 수단은 대부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경제에 대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⁶⁾
 - 경쟁 왜곡: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비해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단들을 동원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 및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됨
 - 투자의사결정 왜곡: 세전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후이익률이 높은 투자안에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함
 - 공정성 및 납세협력 저하: 다국적기업들이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납세자들이 인지하게 되면 전반적인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 동기를 낮추게 될 우려가 있음

6) OEC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project*, February 2014.

- 특히 국가 간 조세경쟁 및 소득이전은 단순히 조세문제만을 넘어 일국의 경제성장 및 복지 수준 전반에 걸친 영향을 줄 수 있음⁷⁾
- 글로벌경제에 있어 일국의 조세정책이 타국의 조세 문제에 미치는 영향(‘Spillover’)이 커져가면서 국가 간 자본투자(FDI)의 흐름 왜곡 및 잠재적 세수 일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가 간 직접투자에 있어 조세 환경이 잠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GDP 대비 FDI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경제 환경 이외에 조세 차원에서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표 II -1〉 주요 국가들의 FDI 비율 비교(2012)

(단위: %)

국가	GDP 대비 FDI 비율	전세계 FDI합계 대비 해당국 FDI 비율	전세계 GDP 대비 해당국 FDI 비율
Luxemburg	4,710	10.2	0.07
Mauritius	2,504	1.1	0.01
Netherlands	530	15.4	0.91
Hong Kong	409	4.1	0.31
Cyprus	252	0.2	0.03
Ireland	171	1.4	0.25
Hungary	170	0.8	0.15
Switzerland	148	3.6	0.75
Malta	101	0	0.01
Belgium	100	1.8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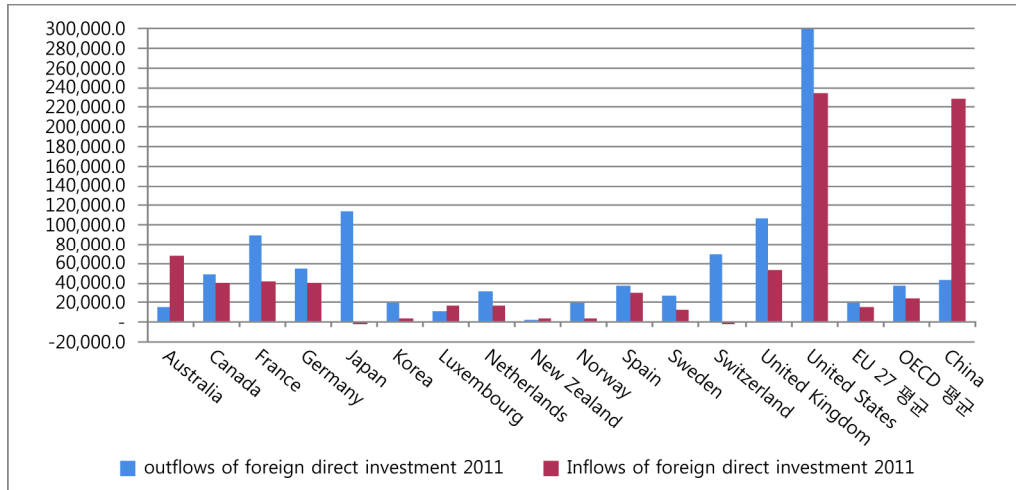
자료: FDI stocks relative to GDP - The Top Ten(2012), “SPILLOV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IMF POLICY PAPER, 2014.5.9.

– 우리나라는 FDI 유입(inbound) 보다 해외 FDI 투자(outbound)가 더 높게 나타남

7) “SPILLOV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IMF POLICY PAPER, 2014.5.9.

[그림 II -1]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2011)

(단위: 백만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 전세계 각국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Spillover 현상으로 인한 잠재적 세수 일실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법정세율 평균은 2000년 32.6%에서 2011년 25.4%로, 7.2%p 인하되었음. 이러한 세율 인하 추세는 31개국에서 관찰되었으며, 칠레(15 → 17%) 및 헝가리(18 → 19%)에서만 세율 인상이 나타났음⁸⁾
- 법정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전반적인 과세범위 확대를 통해 법인세 세수 전체 규모는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법정세율 인하가 곧바로 세수 일실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

□ 조세회피 및 이로 인한 세원잠식은 아래에서와 같이 여러 수단을 통해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이중비과세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전가격 남용
- 무형자산 재배치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1호, p. 7.

- 기업 간 부채 거래
 - 국가 간 조세취급상 상이함을 활용한 거래
 - Treaty Shopping 등
- 조세회피 수단 중 다국적기업 그룹의 부채 거래 활용 방안은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자본이동을 촉발하여 국가적 세원 손실뿐만 아니라 자본흐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일국의 법인세법상 이자지급비용이 공제 가능한 한편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저율 과세 또는 면제된다면, 이는 고세율국 소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세율국으로 과세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이 됨
 -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 조세적 측면으로 인해 기업 간 자금대여 거래가 촉발되어 고세율국에서의 세금 납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⁹⁾
 - 이러한 다국적기업 간의 자금 대여 거래를 통한 세원 잠식 효과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¹⁰⁾

2. 국내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가.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나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함
- 채권자불분명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 "SPILLOV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IMF POLICY PAPER 2014.5.9. De Mooij, Ruud A., 2011, "The Tax Elasticity of Corporate Debt: A Synthesis of Size and Variations," IMF Working Paper 11/95.

10) Clemens Fuest, Shafik Hebous & Nadine Riedel, 2011, "International debt shifting and multinational firms in developing economies," *Economics Letters*, Vol. 113 (November).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제도
 - 국제조세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이자제한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조세의 투명성, 이중공제 방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유도 등의 목적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거래가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자산과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시가가 아닌 이자율로 자금대여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이 아닌 이자율로 자금대여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¹¹⁾을 시가로 함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2013년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69로 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3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외국법인 전체의 자본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자기자본비율보다 작으면 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공제가 제한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법인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세금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규정하고 있음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차입한 금액은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¹²⁾

-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봄

○ 다만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하고 있다.

12) 이 조항은 미국의 1993년 개정법(P.L. 103-66, 13228(a)조)에서 온 것이다(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년, p. 70.).

- 이러한 적용배제는 OECD모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정상가격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무차별원칙을 고려한 것임¹³⁾

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 세제

- 현행 세제에서 금융비용 과다공제를 제한하는 세제는 과소자본세제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제도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도 과다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자 간 공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제한 의도가 강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
-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과거에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인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었음
 - 1997년 관련 규정 제정시 제·개정 이유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제정은 1997년에 이루어졌으나 부칙으로 2000년부터 시행(최초에는 2002년부터 시행이었으나 이후 2000년으로 앞당김)
 - 2004년 관련 규정 폐지 시 제·개정 이유에서는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대상 기업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함¹⁴⁾
 -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임
 - 차입금 대비 자본의 배수는 4배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가 적용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

13)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2006)』,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4) 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국외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논의

- ☐ 부채와 자본의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 왜곡과 차익거래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음
- ☐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 암스테르담연구소(Amsterdam Centre for Tax Law: ACTL)에서의 논의를 살펴 봄
 -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과소자본세제 및 Earning Stripping 등을 중심으로 살펴 봄
 -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 및 기업자본에 대한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포괄적법인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를 포함한 부채/자본의 난제(Debt/Equity Conundrum), 혼성증권 및 자본조달조건에 따른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음

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 ☐ OECD의 BEPS 관련 논의에 있어, 금융비용의 공제를 통한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 문제 또한 주요 이슈 사항들 중 하나로 인식, 논의되고 있음
 -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행위에 대한 논의(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2013.3.19.)에서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금융비용 공제 관련 문제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음

- OECD는 2013년 7월에 BEPS 문제에 대한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금융비용 공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Action Plan 제시 이후 지속적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행위에 대한 논의(2013.3.19.)¹⁵⁾

- 대다수 국가의 세법 규정에서는 부채 및 자본에 대해 각기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자본보다는 부채 도입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됨
- 즉, 투자 재원을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자기자본 투자보다 세무상 유리하며, 이자를 수취하는 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 집단 전체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짐
 -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그룹 내 저세율 국가 소재 법인이 재무 운용을 총괄하면서 다른 자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 구조를 사용하는 것임.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에서의 이자 지급은 손금 산입되는 한편 이자 수령 법인 단계에서는 저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어 전체 기업 집단 차원에서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함
- 이러한 다국적기업 간 부채 거래를 통한 세원잠식의 한 예로서, 아래와 같이 전략적 채무이전 (debt-push down)을 통한 차입매수 및 중간지주회사(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의 이용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음¹⁶⁾
 - 이 사례에서 다국적 그룹은 자회사인 L지주회사, T지주회사, Target Co.를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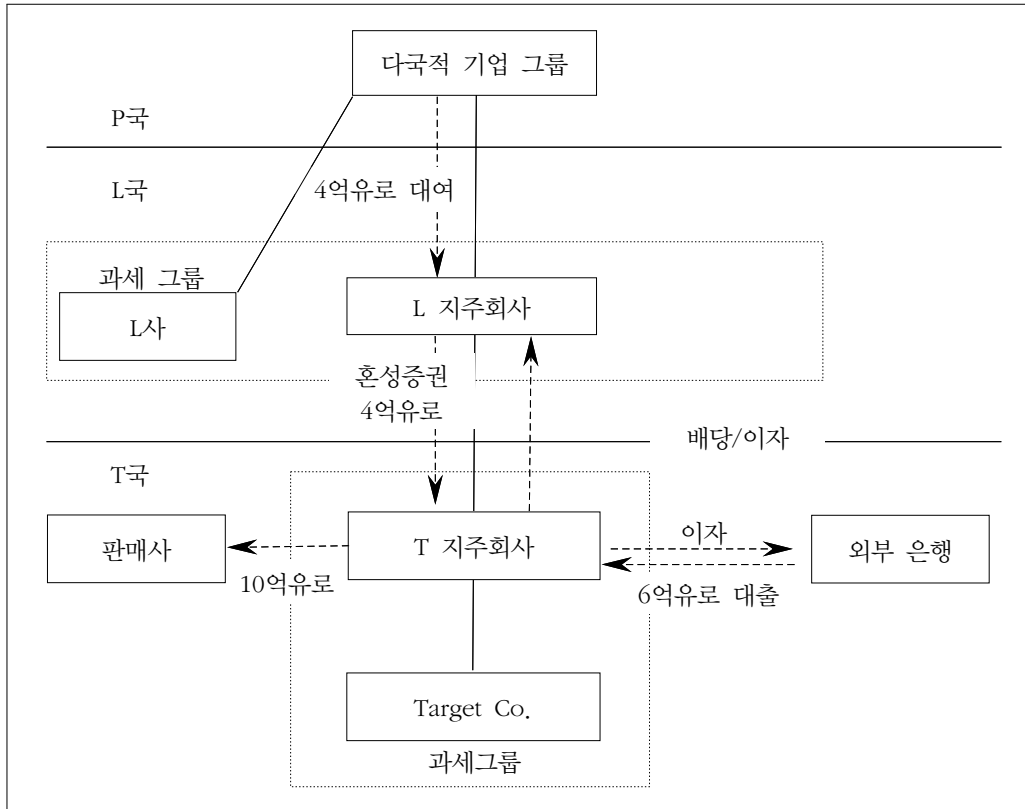
15) OECD,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March 2013.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1호, pp. 45~47, 부록 3 인용

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계획을 수립함

- P국에 본사를 두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다국적 기업은 T국의 내국법인인 제조회사 Target Co.를 취득할 계획임
- 취득가격 10억유로 중 60%는 외부 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나머지 40%는 다국적기업의 유보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은 L지주회사를 설립하고 L지주회사는 그룹 내부자금으로 4억유로를 조달한 후에 L지주회사는 T국에 T지주회사를 설립함
 - T지주회사는 L지주회사로부터 혼성증권(hybrid instrument)을 통해 4억유로를 조달하며, 외부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6억유로를 조달함
 - 이러한 자금으로 T지주회사는 Target Co.를 취득하고, T지주회사와 Target Co.가 T국 세법상 하나의 과세그룹(tax grouping)을 형성하기로 함
-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다국적기업은 여러 가지 세무상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그중 하나로, 자회사로의 전략적인 채무이전 기법은 외부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기업집단세제(group tax regimes)를 통해 Target Co.의 경상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함
 - L지주회사는 T지주회사에 상환우선주와 같은 혼성증권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자금조달은 L국에서 자본으로 취급되는 반면 T국에서는 부채로 취급됨
 - 그 결과 T지주회사가 L지주회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T국에서 T지주회사와 세무상 하나의 과세그룹인 Target Co.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이러한 지급금이 L국에서는 L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므로 L국에서도 과세되지 않음

[그림 II-2] 차입매수



- 또한 L지주회사가 그룹 내부에서 차입한 4억유로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도 L지주회사와 L국의 다른 계열사가 과세그룹을 형성함으로써 그 계열사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L국에서의 과세부담을 줄임
- 이러한 구조를 통해 T지주회사가 L지주회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T국의 원천징수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그룹은 T국과 L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도 신청할 있음
- 투자금액을 회수할 경우에도 T지주회사의 지분은 매입자에게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음
 - L국은 국내법상 지분의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는 반면, T국은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실제로 해당 소득을 과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2) Action Plan(2013.7.)¹⁷⁾

- ☐ OECD는 아래에서와 같이 이자비용을 활용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에 관해 권고안을 준비할 예정임
 -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위하여 관계사 또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을 활용하는 것
 -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이자 지급에 준하는 금융거래이나 비과세 또는 이연과세되는 거래를 활용하는 것
- ☐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포함하여 관계사간 금융거래의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 금융 및 이행 보증(financial and performance guarantee) 제공
 - 은행 간 거래에 있어 사용된 내부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
 - captive 및 기타 보험상품 거래
- ☐ 또한 상기에서와 같은 작업은 혼성금융상품(hybrid)을 활용한 거래에 있어서의 조세 회피 문제나 CFC rule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작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임

3) 후속 계획¹⁸⁾

- ☐ OECD는 2015년까지 금융비용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국세법 및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임
 - 2015년 9월까지 국내 세법 규정 관련 사안들에 대한 권고안 제시

17)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July 2013.

18) <https://www.oecd.org/tax/beps-about.htm> 등

- 2015년 12월까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수정 권고 사항 제출
- OECD는 이러한 BEPS Action Plan 이행을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 OECD 국가 이외 다수의 국가들(브라질, 중국 등 10개국)도 Associate 국가로서 각종 관련 논의에 동등하게 참여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를 통해 세부 Action Plan 이행안 도출
 - 비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과의 폭넓은 논의 및 의견 반영

나. 국제조세협회(IFA) 브뤼셀 세미나(2008)¹⁹⁾

- 200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조세협회가 ‘기업의 역외이자 세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경향(new tendencies in tax treatment of cross-border interest of corporations)’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이자에 대한 5가지 주요 논제에 대해 32개국의 지부에서 보고받아 취합됨
 - 주요 논제는 기업의 역외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의 새로운 경향, 차입자의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역외이자의 원천징수, 채권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과세처리, 이자소득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법임
- 결과보고에서는 역외이자에 관한 경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이자공제규정이 강화되고 있음
 - 이자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규정(general limitation on interest expense) 적용
 - 과소자본세제의 강화
 -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한 강화

19) Pascal Hinny, *New tendencies in the tax treatment of cross-border interest of corporation*, General Report,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85a, Online Books IBFD, 2008.

-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해석에 따른 변화
 - 국내와 역외 금융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약정에 대하여만 CFC제도를 적용하도록 제한
 - 가상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및 이자공제의 폐지
 - 기업자본공제 도입 및 포괄적법인세제에 대한 논의
- 새로운 경향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내용은 이자공제규정의 강화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 중 무차별원칙에 대한 것임

1) 이자공제규정의 강화

- 이자비용의 손금 제한은 이론적 근거 및 세수확보 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 등에 의해 추진됨
- 부채와 자본을 무차별하게 과세하라는 학계의 권고
 - 국내거래와 역외거래에 대해 차별하지 말도록 한 ECJ의 요구
 - 이자비용의 손금제한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조세당국의 증가하는 관심
 - 세율을 낮추되 세원을 넓히려는 현재의 추세
- 역외이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은 이자비용의 손금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자비용의 제한에 있어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이자 제한(조세회피방지)이 나타남
 -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과소자본세제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는 국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짐
 -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차익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도입됨
- 과거 특수관계자나 국외차입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이자 제한규정이 등장함

- 일반적 이자 제한규정이 나타나게 이유는 ECJ의 무차별원칙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임
 - 일반적 이자 제한규정은 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더라도 신용공여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 이자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덴마크 및 체코공화국이며 미국, 이탈리아, 영국에서도 논의되고 있음²⁰⁾
- 독일의 경우 2008년까지 모든 기업에 150%로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다가 EBITDA의 30%를 한도로 하는 이자 제한을 적용함
 - 이자비용이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등 예외규정 존재
 - 덴마크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부채비율 400%의 과소자본세제, 자산에 기준이자율(당시 6.5%)을 곱한 금액을 이자비용의 한도로 하는 규정 및 EBIT의 80%까지만 순이자비용을 공제하는 세 가지 제한규정을 둠
 - 이런 강력한 제한규정은 법인세율의 인하와 동시에 적용함
- 과소자본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다 폭넓고 적용되는 비율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과소자본의 비율을 계속적으로 강화함
 - ECJ의 법적해석에 따라 국내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전통적인 과소자본세제에서 벗어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 이자 제한으로 대체
- 과소자본세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향은 이자율과 동시에 차입에 대해서 이전가격의 논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임
- 이전가격의 논점으로 형성되어 자본비율은 일종의 세이프하버물로 여겨지고 있음
 - 이전가격의 논점으로 접근하는 국가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공정원칙(arm's

20) 자세한 내용은 'Ⅲ. 국외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 참조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음²¹⁾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함

- 보고 대상 총 34개국 중 18개국이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외차입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7개국임

〈표 II-2〉 각국의 과소자본세제(2008)

과소자본세제 적용국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 ¹⁾	
국내차입 및 국외차입 모두 적용	국외차입에만 적용			
	공정차입 적용배제 규정이 있는 국가			
9개국	8개국		1개국	16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호주	대한민국, 멕시코, 포르투갈 ²⁾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²⁾ , 스위스, 미국	칠레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인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우루과이

주: 1) 형식적으로 과소자본세제가 없으나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존재

2) EU 비회원국에게 대해서만 적용됨

자료: Pascal Hanny, *New tendencies in the tax treatment of cross-border interest of corporation*, General Report,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85a, Online Books IBFD, 2008, pp. 38~39, 재구성,

2) 유럽 사법재판소의 무차별원칙에 대한 결정

- ECJ에서는 무차별원칙과 위법한 국가보조에 대한 판례를 축적해오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EU 27개 회원국 간에 국내와 역외 차입과 국내와 국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사용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임

21) 자세한 내용은 ‘III. 국외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 참조

- 현실에서는 국가 간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보다 ECJ의 해석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CJ는 이러한 원칙을 제3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EU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음
- ECJ는 2002년 12월 Lankhorst-Hohorst 결정²²⁾에서 독일의 과소자본세제규정은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위배된다고 결정함
- 독일의 과소자본세제규정하에서는 국외의 지배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고 국내의 지배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는 재분류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국외기업보다 국내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것임
- 유사한 사례로 ECJ는 2003년 10월 Dutch Bosal Holdings 결정²³⁾에서도 지주회사가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중 네덜란드 이외의 차입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설립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함
- 이외에도 설립의 자유 또는 서비스의 제공 권리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에 대한 다수의 결정이 이루어짐²⁴⁾

다. 암스테르담 조세법센터의 세미나²⁵⁾

- 2011년 4월 ACTL에서는 ‘기업의 이자에 대한 세무처리(Tax Treatment of Interest for Corporations)’ 세미나를 개최함
- 부채와 자본의 구분, 명목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조세조약상의

22) ECJ Decision Lankhorst-Hohorst, 12 December 2002, C-324/00.

23) ECJ Decision Dutch Bosal Holdings, 13 October 2003, C-168/01.

24) EC Decision, Test Claimants in the Thin Cap Group Litigation(Thin Cap GLO), 13 March 2007, C-524/04; NV Lammers & Van Cleeff v. Belgische Staat, 17 January 2008, C-105/07; Fidium Finanz, 3 October 2006, C-452/04; Lasertec, 10 May 2007, C-492/04

25) O. Marres & R. Monteiro, *Chapter 1: Introduction in Tax Treatment of Interest for Corporations*, Online Books IBFD.

이자의 개념, 과소자본세제 및 Earning Stripping, 원천징수 등 이자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이자의 공제제한은 상당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합리적인 자금조달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²⁶⁾
 - 다만 이자는 공제하고 자본은 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부채를 이용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복잡한 이자공제 제한(과소자본세제, 손익기준제한)규정과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 이외에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자본에 대한 공제 및 이론적인 접근방법이 포괄적 법인세제를 고려하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를 제한하고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경향은 전통적인 자본비용 등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이익 등의 수치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도 이자 제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저세율,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제한되어 있거나 실질이 차입이 아닌 거래에서 제3국의 관계기업이 관여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자공제의 제한까지 확대되고 있음

26) H. Vording, "Chapter 2: The Debt/Equity Distinction in Corporate Taxation: Does It Work, Does It Matter?," *Tax Treatment of Interest for Corporations*(O. Marres & D. Weber eds., IBFD 2013), Online Books IBFD.

라.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적용과 관련된 OECD 논의²⁷⁾

- OECD 모델조세협약상 무차별원칙에 대한 조항(제24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제24조 제3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무차별
 - 제24조 제4항: 타방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무차별
 - 제24조 제5항: 타방채약국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무차별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3항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를 내국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
 -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를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할 수 없음
 - 동일한 거래 사안에 대하여 이자비용 제한제도 등 비용공제제도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과 내국법인 간 차등하여 적용할 경우에 동 조항의 위배 여부가 거론될 수도 있을 것임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4항에서는 과세소득 결정 시 기본적으로 자국 거주자 및 타국 거주자에 대한 이자 등의 공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규정함
 -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의 지급금은 동 지급금이 동 일방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함
 - 다만, 모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등의 이전가격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방채약국 거주자에 대한 이자 등의 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27) Craig Elliffe, “Unfinished Business: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the Non-Discrimination Article in the OECD Model,”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13, pp.26~32.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4항의 주식²⁸⁾에 따르면, 이전가격원칙 등에의 부합 여부에 따라 자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타당성이 좌우될 수 있음을 언급함
 - 동 주식에서는 내국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가 이전가격원칙 등에 부합한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동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단지 비거주자인 대여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음
 - “Paragraph 4 does not prohibit the country of the borrower from applying its domestic rules on thin capitalisation in so far as these are compatibl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9 or paragraph 6 of Article 11. However, if such treatment results from rules which are not compatible with the said Articles and which only apply to non-resident creditors (to the exclusion of resident creditors), then such treatment is prohibited by paragraph 4.”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지배하는 기업의 경우와 달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무차별원칙 위배로 봄
 - 동 조항상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차별원칙의 위배로 봄
 - 타방채약국 거주자가 일방채약국 내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 또는 전적·부분적으로 소유하며, 당해 비거주자 소유 기업이 동 일방채약국 내에 다른 주체가 소유한 유사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과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28) Para. 74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24 (2010)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 동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4항에서와 같이 이전가격원칙 적용에 따른 예외에 대한 언급은 없음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5항의 주석²⁹⁾에서는 동 조항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동 조항 문언상의 적용 범위보다 다소 제한된 해석을 하고 있음

- 동 주석에서는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5항의 목적이 외국 자본 및 국내 자본 투자 여부에 따라 거주지국 기업들 간에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 “This paragraph forbids a Contracting State to give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an enterprise,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or controlled, wholly or partly,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provision, and the discrimination which it puts an end to, relates to the taxation only of enterprises and not of the persons owning or controlling their capital. Its object therefore is to ensure equal treatment for taxpayers residing in the same State, and not to subject foreign capital, in the hands of the partners or shareholders, to identical treatment to that applied to domestic capital.”
- 또한 동 주석에서는 과소자본세제가 거주지국 기업의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이를 당해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언급함
 - “if under a State’s domestic thin capitalisation rules, a resident enterprise is not allowed to deduct interest paid to a non-resident associated enterprise, that rule would not be in violation of paragraph 5 even where it would be

29) Para. 76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24 (2010)

applied to payments of interest made to a creditor that would own or control the capital of the enterprise, provided that the treatment would be the same if the interest had been paid to a non-resident associated enterprise that did not itself own or control any of the capital of the payer.”

○ 한편, 동 주석³⁰⁾에서는(비록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5항의 문언상으로는 언급이 없지만) 오직 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에만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의 경우라도 이전 가격원칙 등에 부합하면 이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 “Indeed, sinc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or paragraph 6 of Article 11 form part of the context in which paragraph 5 must be read (as required by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djustment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se provisions could not be considered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의 무차별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OECD 모델 조세협약 및 논의사항을 종합하면, 조약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무차별원칙이 넓게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제5항에서와 같이 문언상으로는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무차별원칙 위배로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동 조항에 대한 주석 및 관련 논의사항³¹⁾들을 살펴보면, 당해 공제 제한제도가 이전가격원칙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간의 관계에 대해 OECD에서도 완전히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각국 사법당국의 관련 조약 규정

30) Para. 79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24 (2010)

31)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24(Non-Discrimination), Public discussion draft, OECD, 3 May 2007, pp.24~26

해석에 있어서도 다소간 여러 입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연구 문헌³²⁾에서도 과소자본세제와 무차별원칙에 대한 OECD의 입장은 논리적 일관성이 약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 또한 동 문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소자본세제 관련 대표적 판례 중 하나인 ‘Specialty Manufacturing’ 사건³³⁾에서는 OECD 모델조약에는 없는 미국-캐나다 조약상 특례에 따라 무차별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해당 국가마다 조약상 무차별원칙 적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4. 금융비용 공제 제한제도의 주요 사안

- 위에서 살펴 본 금융비용 공제와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는 이자비용 공제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및 이자 성격 구분 문제 등 별도의 조세회피 쟁점들과도 연계되는 사안까지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쟁점들 중 이전가격 및 이자 성격 구분 문제 등은 과도한 부채 도입을 통한 조세회피라는 문제에 있어 다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금융비용 공제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이자비용 공제 규모 자체에 대한 제한제도임
- 주요 각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자비용 공제 규모 제한 방식은 크게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및 손익기준에 의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부채 규모기준 제한: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부채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볼 때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방법 및 일정 비율에 근거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32)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8권 제4호, 2007, pp. 63~87.

33) Specialty Manufacturing v. Queen, Federal Court of Appeal(Canada), Case No. 659-97(1999. 5. 18) 및 Tax Court of Canada Case No. 95-781(IT)G (1997. 8. 25)

- 정상가격원칙에 의한 방법: 자금을 차입한 납세자의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제3자가 해당 납세자에게 대여할 수준이라 인정되는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전가격세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적 당사자 간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원용하여 정상적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임
 - 비율 기준 방법: 부채-자본 비율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부채 인정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 해당 기준비율은 반드시 정상가격원칙을 반영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음
 - 손익 규모기준 제한: 과세소득 등 다른 기준지표의 일정 비율과 이자비용 크기를 비교하여 동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 주로 영업이익이나 EBITDA 등과 같은 이익지표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결정하며, 'earnings stripping rule'라고도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이자비용 공제 규모 제한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위주로 검토함

Ⅲ. 국외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

1. 영국³⁴⁾

- ☐ 영국은 특정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하지는 아니하며, 이전가격세제에서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중심으로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함
 - 영국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경우, 해당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동 부채 자체가 과도한 경우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는 비용 공제가 부인됨
- ☐ 동 규정은 지배적(control)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또는 특수관계자의 보증 등을 통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 거래에 적용됨
 - 당해 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control)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동일 주체로부터 지배를 받는 양 당사자 간에 차입 거래가 있을 경우에 적용
 - 제3자로부터의 차입 거래라 하더라도 지배적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보증이나 연쇄거래(back-to-back loan)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 ☐ 정상적 부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부채 수준 여부는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개별 판단하게 됨
 - 정상적 부채 수준은 해당 영국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기업의 관점(stand-alone basis)에서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 가능한 수준의 부채 규모를 의미함

34) 주요 정보 출처: 영국 국세청, www.hmrc.gov.uk, U.K.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1 January 2014); IBFD, "United Kingdom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14," PwC, pp.812~813(<http://www.pwc.com/gx/en/international-transfer-pricing/assets/united-kingdom.pdf>).

- 이러한 개념하에서 과도한 부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고려 사항들은 주로 다음과 같음
 - － 독자적 기업으로서 유지 가능한 수준 이상의 이자부담 부채를 보유
 - － 일반적 상관행상의 수준을 초과한 이자율 적용
 - － 정상적 수준에 비해 긴 차입 기간
 - － 일반적 계약 조건에 비해 상환 및 기타 부대조건 등이 불리한 경우
 -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사업활동 및 장기사업계획 · 전망, 재무 구조 및 재무운영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함
- 걱정 부채규모 판단을 위해 기본 재무비율 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일률적인 과세기준 비율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정상적 부채 수준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일정 비율 한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일종의 세이프하버 규정이나 특별 예외조항은 운영하지 않음
 - 다만,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과거 경험상 부채-자본비율이 약 1:1 정도이면 과소 자본세제에서 안전한 것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 국세청이 각 사안들을 보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산업 평균이나 기타 기업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걱정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은 걱정 부채 수준 판단 시 고려 가능한 요소이나, 그 자체만으로 과세 결정 기준이 되지는 않음
- 차입자가 속한 기업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이나 해당 그룹 차원에서의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능력 등도 정상 부채 규모 판단 시 고려하고 있음
 - 다만, 기본적으로 걱정 부채 규모는 각 사안별 특성을 반영하는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일종의 협상(negotiation) 문제이므로, 특정 단일 요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이 과세 여부 결정을 위해 구체적인 양적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이전

가격원칙론에 의거한 제도의 특성상 납세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됨³⁵⁾

- 납세자 및 과세당국 간 이견 발생으로 인해 조세소송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타 주요국들이 이전가격원칙에 입각한 과소자본세제의 도입을 저어한 측면도 있을 것임

□ 이를 감안하여, 영국은 과소자본세제 관련 과세당국과의 사전합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반적 이전가격원칙에 근거한 영국 과소자본세제의 특성상 납세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
- 2007년부터 영국 국세청은 과소자본세제 관련 사전합의(the Advance Thin Capitalisation Agreement, ATCA)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일방적 사전합의제도(unilateral APA)에 해당함
- 동 사전합의의 적용 대상은 상황에 따라 신청 당사자의 특정 금융거래에 한정하거나 신청인 그룹 전체의 부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ATCA는 통상적으로 동 사전합의 신청 이후 과세기간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급 적용 가능함

□ 적정 부채규모를 초과하여 비용 부인된 이자는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하며 추후 이월공제 되지도 아니함

□ 한편, 상기 제도와는 별도로 영국은 기업 그룹에 대해, 전세계 그룹의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그룹 내 영국회사들의 이자비용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적용 대상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 그룹들이며, 최상위 지배회사와 그 자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재무제표상 계정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제한 규모를 산정함

35) Stuart Webber, "Thin Capitalization and Interest Deduction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November 29, 2010, p. 695.

- 우선 그룹 내 영국회사들의 순부채가 전세계 그룹 부채의 75%를 상회할 경우에만 동 제한 규정을 적용함
- 50만파운드를 상회하는 이자비용을 계상한 그룹 내 각 영국회사들의 순이자비용 합계가 연결재무제표상 전세계 그룹의 이자비용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은 손금 부인됨

2. 독일³⁶⁾

- 독일은 2008년 이전까지는 부채비율에 근거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운영하였음
 -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부채-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규모 초과부채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부인하였음
 - 2001년 이전: 부채비율 3:1
 - 2001년 이후 ~ 2008년 이전: 부채비율 1.5:1
 - 일종의 세이프하버 조항으로서,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부채가 동일한 조건하에 제3자로부터 도입할 수도 있었던 것임이 입증된다면 동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자에 지급된 이자비용이 연간 25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08년 이후에는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이자 공제를 제한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였음
 - 2008년 이후 세전이익 대비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earnings-stripping rule)으로 전환하였음

36) 주요 정보 출처: IBFD, German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1 February 2014).

Martin Ruf & Dirk Schindlerz, *Debt Shifting and Thin-Capitalization Rules-German Experi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December 13, 2012, pp.12~14.

Stuart Webber, "Thin Capitalization and Interest Deduction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November 29, 2010, pp.692~693.

Deloitte, *International Tax -Germany Highlights 2014*, p.2.

- 독일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 차입금뿐만 아니라 외부 차입금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됨
-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 부인하는 방식을 적용함
 - 독일 기업 및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도 적용 대상이 됨
 - 동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 당해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동 기업 EBITDA의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은 비용 공제 부인됨
 - － 순 이자비용: 지급 이자비용에서 수취 이자소득을 차감한 금액
 - － EBITDA: 과세 대상 순이익에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음과 같은 관계회사 기업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공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기업그룹: 당해 기업이 회계기준(IFRS,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독일 회계기준)상 다른 회사들과 연결실체를 구성(consolidated)하거나 동 기업의 재무·경영 의사 결정이 다른 회사들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을 경우를 의미함
 - － 다만, 어느 한 주주가 당해 기업의 주식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동 주주에 지급되는 이자가 당해 기업의 순이자비용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당해 기업의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동 기업이 속한 전세계 기업그룹의 자기자본비율보다 2%point 이상 낮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당해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연간 300만유로에 미달할 경우 이자비용 공제 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은 후속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 당해 연도 한도 초과분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후속 연도의 한도 여유분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한편 당해 연도에 이자비용이 한도에 미달할 경우 동 여유분은 향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함

3. 이탈리아³⁷⁾

- 이탈리아는 2008년 이전까지는 부채비율에 근거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운영하였음³⁸⁾
 - 과거에는 4:1의 부채-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규모 초과부채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부인하였음
 - 지주회사 또는 매출액 750만유로 이상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됨
 - 대상 기업의 부채 규모가 그 자신의 신용으로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서 제3자로부터 차입 가능할 정도임이 입증된다면 초과부채에 대해서도 이자비용을 부인하지 아니함
- 2008년 이후에는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체제로 전환하였음
 - 독일의 과소자본세제 개편 등의 영향을 받아 2008년 이후부터는 세전이익 대비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earnings-stripping rule)으로 관련 과세체제를 전환하였음

37) 주요 정보 출처:

IBFD, Ital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20 March 2014), Deloitte(http://www.deloitte.com/Assets/Dcom-Luxembourg/Local%20Assets/Documents/Channels/dttl_tax_guide_2012_italy.pdf)

38) Ana Paula Dourado & Rita de la Feria, *Thin Capitalization Rules in the Context of the CCCTB*, 2008.4, p. 10.

-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함
 - 동 제도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 당해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동 기업 EBITDA의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은 비용 공제 부인됨
 - － 순 이자비용 : 지급 이자비용에서 수취 이자소득을 차감한 금액
 - － EBITDA: 매출액에서 생산비용(감가상각, 감모상각 및 금융리스 지급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관련 재무 수치는 독일과는 달리 과세소득 기준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일부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 근저당부 채무 및 매입채무 관련 이자비용 등은 공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의 경우 회계장부상 이자비용의 96%까지 비용 공제가 가능함

-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은 후속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 당해 연도 한도 초과분은 기간 제한 없이 후속 연도로 이월 가능함
 - 당해 연도의 이자비용이 비용 공제한도에 미달할 경우 동 한도 여유분은 차기로 이월하여 후속연도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음
 - 연결과세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어느 한 기업의 비용 공제한도 여유분을 동 집단 내 타 회사가 사용할 수 있음
 -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함

- 참고로,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자기자본 증가분에 대한 명목이자 공제(Net Interest Deduc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기자본 증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명목이자 공제율을 적용함
 - － 2011~2013년: 3%
 - － 2014년: 4%

- 2015년: 4.5%
- 2016년: 4.75%
- 2017년 이후: 향후 재무부령으로 결정
- 자기자본 증가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감하여 산출함
 - 현금 출자분(contributions in cash) 가산
 - 미배당 이익 가산
 - 주주 분배금 차감
- 자기자본 증가분에 대한 명목이자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부채 대신 자기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4. 일본³⁹⁾

-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익 대비 이자비용 공제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음

가. 부채규모 기준 제한

- 부채규모 기준 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해 적용됨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거래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를 의미함
 - (a)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차입금, 또는

39) 주요 정보 출처:

IBFD, Japa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1 February 2014).
 IBFD, IFA Cahiers 2013 - Volume 98A, The taxation of foreign passive income for groups of companies - Japan.
 Tomohiko Nakamura, "Comparative Survey - Japan," *Intra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November/December 2008
 KPMG(<http://www.kpmg.com/jp/en/knowledge/article/japan-tax-newsletter/Documents/Earnings-Stripping-Rules-20120906E.pdf>)

- (b) 동 지배주주로부터 당해 일본법인과 같이 공통의 지배를 받는 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차입금
 - 직접 차입거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보증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도입한 차입금도 적용 대상이 됨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거래 및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제3자를 경유한 back-to-back loan 등
 - 또한 일본에서 지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의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기 규정하에서 기본적으로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동 주주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가 부인됨
- 동 규정은 우선 당해 기업 전체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평균 부채금액이 자기자본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함
 - 그 다음으로, 당해 기업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평균 부채금액이 동 지배주주 지분율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금액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부인됨
 - 다만, 당해 기업과 유사한 비교 대상 국내 회사의 부채비율이 존재할 경우 상기 3:1 비율 대신 동 비교 대상 비율을 사용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손금 부인된 차입금 이자는 후속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한편,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함

나. 손익 기준 이자비용 제한제도

- 2013년 이후부터는 손익 규모 대비 이자비용을 제한하는 제도(일종의 earnings-stripping rule)도 같이 운영함
- 2013년 4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동일인이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두 회사
-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관계
- 부채규모 기준 제한과는 달리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국외 지배주주에만 국한되지는 아니하나, 일본에서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자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국외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가 있음
- 특수관계자 지급 이자비용이 당해 기업 조정 후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 공제가 부인됨
 - 지급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함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사채할인액
 - 금융리스 지급액 중 이자비용 부분 (총리스지급액이 1천만엔 이상인 경우)
 - 사채상환 손실 및 지급보증료
 - 채무증권 프리미엄 상각액 등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준하는 것
 - 조정 후 과세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다음의 항목들을 다시 가산(Add-back)하여 산출하되, 수취배당소득 조정·외국납부세액 조정·이월결손금 공제 등 소정의 과세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으로 함
 -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비용
 - 법인세 목적상 손금인정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로서 법인세법상 인정 범위 내의 금액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이 연간 1천만엔 이하이거나 특수관계자 지급 이자비용이 전체 이자비용의 50% 이하일 경우 동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당해 연도에 비용공제 부인된 금액은 향후 7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 상기 ‘가’의 과소자본세제와 ‘나’의 이익 대비 이자비용 제한제도는 상호 중복적용되지는 아니하며 둘 중 비용부인 금액이 큰 규정만 적용됨

5. 프랑스⁴⁰⁾

- ☐ 프랑스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및 전체 이자비용에 대한 일괄적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채비율 기준 및 이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자비용 과다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순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가.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제한-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기준 이자비용 공제 제한

- ☐ 동 제한 규정은 프랑스 기업이 지배적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을 통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 거래에 적용됨
- 특수관계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성립함
 - (a) 당사자 일방이 타방 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동 타방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또는
 - (b) 그 외 회사가 당해 두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두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40) 주요 정보 출처: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1 January 2014).
 David Jervis, Ben Jones Elspeth, and Van den Brande, "Analysis-Deductibility of finance costs across Europe," www.taxjournal.com, October 4, 2013, pp. 16~17.
 Deloitte(<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france-highlights-2014.pdf>)
 Clifford Chance, *French Thin-Capitalization Rules*, March 2011.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 France*, 2014., pp. 430~431.
 Deloitte, *International Tax -World Tax Advisor* (January 24, 2014), p.2.

- 비용공제 한도액은 부채비율 및 손익접근법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것을 한도로 함
 - 부채/자본 비율 한도: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부채 중 동 기업 자기 자본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급된 이자 금액
 - 이익 대비 이자비용 한도: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기업의 조정 후 영업이익의 25% 상당 금액
 - 조정 후 영업이익: 세전이익으로서 특수관계자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및 특정 리스 지급액 등이 차감되기 전의 이익
 - 특수관계자 수취 이자: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금액
- 상기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부인된 차입금 이자는 후속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 손금부인액은 2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나, 해당 공제 가능액은 이월공제 기간의 2차 연도부터 연간 5% point씩 낮아짐
 -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함
- 상기 공제 제한의 예외조항 중 하나로서, 다국적 기업그룹의 부채비율과 비교하여 비용 공제를 인정하기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업그룹이란 회사법에 따른 통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집합이며, 통제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사회의 지배 등을 의미함
 - 일종의 세이프하버 규정으로써,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동 기업이 속한 전세계 기업그룹의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상기 이자비용 공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 기타 예외 조항으로서 특정 금융거래나 소규모 거래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은행이나 대부기관 등이 지급하는 이자
 - 연간 한도 초과 이자비용이 15만유로 미만인 경우

나. 이자비용 일괄공제 한도

- ☐ 상기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제한과는 별도로 프랑스는 전체 순이자비용의 일정 비율을 비용 공제하는 한도(cap)를 두고 있음
 - 총손금산입 한도는 2014년도에는 순이자비용의 85%, 이후 연도에는 75% 해당 금액까지임
 - 이는 프랑스 기업 및 외국법인의 프랑스 국내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됨
 - 동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 공제되지 아니하며, 배당으로 2차 소득처분되지 아니함
- ☐ 중소기업 규모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이자비용이 300만유로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캐나다⁴¹⁾

- ☐ 캐나다는 주로 부채비율 기준에 따라 이자 공제 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특정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관련 부채비율이 1.5:1을 초과할 경우 이자 비용 공제를 제한함
 - 과거에는 2:1의 부채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 12월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준 비율이 1.5:1로 강화되었음
- ☐ 동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specified non-residents)로부터 받은 차입금을 적용 대상으로 함

41) 주요 정보 출처:

IBFD, Canada - Transfer Pricing & Intra-Group Financing - Topical Analyses - 1, Corporate Income Tax Framework (1 February 2014).

Canada Revenue Agency, IT59R3 Interest on debts owing to specified non-residents (thin capitalization).

- (a) 당해 캐나다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시가 기준 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주주, 또는
 - (b)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동 주주 집단과 독립적 거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 특정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부인됨
- 특정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중 이자부담부 부채의 월간 최대잔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캐나다 법인의 자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출함
 - － (ㄱ) 당해 캐나다법인의 과세연도 초 이익잉여금 잔액
 - － (ㄴ) 특정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법인에 납입한 자본잉여금 월간 잔액의 평균치
 - － (ㄷ) 동 법인의 납입자본금 월간 잔액 평균치로서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될 부분
- 손금 부인된 차입금 이자는 후속연도에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됨
- 2014년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중간단계 법인을 경유한 차입금(back-to-back loan)에 대해서도 이자공제 제한제도가 적용됨
- 동 개정 규정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법인 등 거주자가 중간단계 회사(은행 등)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중간단계 회사가 제3자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 이와 더불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 (a) 당해 캐나다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특정 국외특수관계자(specified non-residents)가 동 중간단계 회사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 (b) 중간단계 회사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제한된(limited recourse)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또는
- (c) 중간단계 회사가 캐나다 법인에게 대여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간단계 회사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간단계 회사에 대한 부채는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채로 간주되어 상기 이자 공제 제한 적용 산식에 따라 해당 이자비용 부분은 손금 공제 부인됨
- 동 개정 규정은 2014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7. 미국⁴²⁾

- ☐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제한(earning stripping rule)은 IRC 제163조 이자(interest) (j)에서 기술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외국법인에 의해 소유되는 미국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지점(branch) 또는 국외법인에게도 적용됨
- ☐ 비적격이자비용(disqualified interest paid or accrued)은 산정된 초과이자비용의 금액까지 공제가 제한되며 이월되어 공제되지 않음
- ☐ 비적격이자비용이란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함
 - 특수관계자⁴³⁾에 대한 지급이자나 미국 세법에 의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자비용이지만 비적격보증이 이루어지고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 미국세법상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비적격보증이란 미국 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조직 또는 개인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보증을 의미함

42) IRC s. §163(j).

43)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IRC s §267(b) 및 707(b)(1) 참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 초과이자비용이란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기업의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의 50%와 초과 이월한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 초과이월한도란 이전기간에 이 조항에 따른 한도미달액으로 초과이월한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후 3개년간 미달액을 이월할 수 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은 기업에 초과이자비용(excess interest expense)이 발생하며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됨

8. 덴마크

□ 덴마크는 이자비용 제한과 관련하여 과소자본세제, 자산기준 및 EBIT 규정에 따른 금융비용제한의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⁴⁴⁾

□ 과소자본세제에서는 특수관계자인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통제되는 차입금(controlled debt)이 존재하며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함

○ 덴마크 거주자인 법적실체와 덴마크에 고정사업장을 두어서 덴마크 세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적실체에 적용됨

○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인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임

○ 통제되는 차입금이 1천만크로네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통제되는 차입금은 특수관계자가 제3자의 대여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44) Jan Guldmand Hansen & Nikolaj Vinther, *The debt-equity conundrum, Branch Report: Denmark*,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7b, Online Books IBFD, 2012, p. 232.

- 납세자가 차입금이 시장조건에 따른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손금이 인정됨⁴⁵⁾
- 제한된 이자지급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⁴⁶⁾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음⁴⁷⁾
- 금융비용 공제 제한은 자산과 EBIT(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의 두 가지 기준이 있음
 - 과소자본세제와는 달리 제3자 차입금 등에도 적용됨
 - 대상 금융손익은 이자손익, 대출수수료 및 유사 손익, 과세 대상이 자본손익, 금융리스하의 추정 금융수수료 등을 포함함
 - 순금융손익이 2,130만크로네(2014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이러한 기준은 그룹기준으로 적용
- 자산기준제한은 기업의 적격자산에 4.2%의 기준이자율(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까지 금융비용의 공제를 인정함
 - 적격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의 세무기준액, 비상각자산의 취득원가, 이월되는 이월결손금, 금융리스하에서 리스이용자의 자산 등을 포함함
 - 종속기업의 주식, 채권, 현금, 대출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등은 제외됨
- EBIT 규정은 이자비용 차감 전 세전 과세소득(EBIT)의 80%까지 순이자비용을 공제하는 것임⁴⁸⁾
- 자산기준제한에 따른 금융비용 공제제한은 이월되지 않지만 EBIT 규정에 따른 제한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될 수 있음⁴⁹⁾

45) PwC,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2014*, p.374.

46) Arne Riis,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47) Jan Guldmand Hansen & Nikolaj Vinther, *ibid.*, p.234.

48) Arne Riis, *op. cit.*

49)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3-14*, p.345.

9.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2012년까지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였으나 다른 이자 공제 제한규정을 제정하면서 2013년 1월 1일로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삭제함
 - 기존의 과소자본세제는 같은 그룹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채가 5십만유로를 초과하면서 ①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부채 및 ② 연결기준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였음⁵⁰⁾

- 현행 네덜란드는 이자비용이 75만유로를 초과하는 참여부채(participation debt)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⁵¹⁾
 - 초과이자(excess interest)는 총이자비용 등의 원가에서 참여부채의 비중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text{초과이자} = \text{총이자비용 및 관련 원가} \times \frac{\text{참여부채}}{\text{총부채}}$$

- 참여부채란 네덜란드 세법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관련 소득이 참여면세(participation exemption)로 분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네덜란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의 배당, 숨겨진 이익분배(hidden profit distributions) 등의 소득은 이에 해당함
- 참여면세는 최소한 5% 이상의 지분이 존재할 경우 자산소득에 대한 면세를 적용
- 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위축을 지양하기 위해 영업활동의 확장에 있어 참여부채의 취득은 제외하나 다음의 예외가 존재함⁵²⁾
 - 동일한 이자의 이중 공제
 - 과세회피를 위한 이중이자 공제와 연계된 혼성금융 구조화
 - 이자 공제를 위한 금융약정체결

50) PwC, *European Tax Newsalert*, September 20, 2012, pp.1-2.

51)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3-14*, p.922.

52) Paul te Boekhorst,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 이러한 참여부채에 대해 이자비용 공제제한은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방지규정으로 금융비용 과다공제의 제한과는 성격이 다름

10.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과소자본세제는 뉴질랜드 기업에 대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일의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집합에 대해 적용함
 - 국내그룹 총자산의 60% 또는 기업의 전세계그룹 (총자산 대비)부채비율의 110%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이자 공제를 제한함⁵³⁾
 - 전세계그룹은 재무보고상의 연결재무보고 대상 기업(Worldwide GAAP Group)을 포함함⁵⁴⁾
 - 그러나 실무상 신뢰성이나 비용·효익 측면에서 전세계 그룹 총자산의 비율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단일의 세이프하버물(즉, 60%)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함⁵⁵⁾
 -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수준까지 이자 공제를 제한함⁵⁶⁾
- 뉴질랜드는 국내에서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지배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 투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를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음⁵⁷⁾
 - 국내와 국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국내를 먼저 적용함

53)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transfer-pricing/practice/transfer-pricing-practice-thin-cap-rules.html>)

54) Richard Williams et al., *Thin capitalisation, what do the differences in the New Zealand and Australian thin capitalisation regimes mean for corporates and investment?*, Ernst & Young, October 2013, p. 38.

55) Richard Williams et al, Ibid. p. 7.

56) Alan Judge & Casey Plunket, *The debt-equity conundrum, Branch Report: New Zealand*,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7b, Online Books IBFD, 2012, p. 518.

57) the Policy Advice Division of Inland Revenue and the New Zealand Treasury, Review of the thin capitalisation rules: An officials' issues paper, January 2013, p. 17.

- 비율의 적용은 국내그룹에 75%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투자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함
 - 2012년 국내투자자에 대한 국내그룹 자산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출 때 국외투자자에 대한 비율을 수정하지 않아 차이가 나고 있음⁵⁸⁾
- 다만, 국내그룹의 자산이 전세계 그룹의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나 국내그룹의 이자공제가 25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
- 공제가 제한된 이자는 원천세나 조세조약의 측면에서 여전히 이자로서의 성격을 유지함⁵⁹⁾

11. 호주⁶⁰⁾

- 국외에서 지배하는 호주기업 또는 지점 및 국외기업이나 해외지점을 지배하는 호주기업에 적용
 - 관계기업과 합하여 연간 25만호주달러 이하의 부채 공제(즉, 이자비용 등의 공제), 자산의 위험관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해외투자를 보유하는 호주기업 중 호주 내의 자산이 전체 총자산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 관계기업이란 대상 기업의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배당 등의 재무정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함
- 일반기업은 부채가 호주 투자의 순가치의 75%(즉, 부채/자본비율이 300%) 초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 2,000% 초과, 은행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비율이 4%를 미달하는 경우 적용
 - 공정부채금액(Arms' Length Debt Limit)을 적용하여 적정한 부채수준이라고 판단

58)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14 - New Zealand*, p.647.

59) Alan Judge & Casey Plunket, *ibid.*, p.518.

60)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

되면 부채에 대한 공제를 인정함⁶¹⁾

- 국외기업이나 해외지점을 지배하는 호주기업에 대해서는 전세계그룹의 120%의 비율로 한도로 부채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⁶²⁾
 - 전세계그룹은 호주기업과 호주기업의 피지배 외국기업을 의미함

$$\text{호주기업 순자산} \times \frac{\text{전세계 부채비율} \times 120\%}{\text{전세계 부채비율} \times 120\% + 1}$$

- 공제되지 않은 비용은 이월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투자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호주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이 법안에서는 개별기업 적용 부채비율 및 전세계 부채비율의 가중비율 하향조정,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비용한도 상향조정, 국내투자에도 전세계 부채비율의 적용, 공정부채비율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⁶³⁾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강화함
 -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 부채비율을 3:1에서 1.5:1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entities)의 경우 부채비율을 20:1에서 15:1로 변경
 -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은 위험가중자본비율을 4%에서 6%로 변경
 - 일반기업의 국외투자 시 개별기업 과소자본세제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전세계

61)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820-410.

62) 자세한 계산방법은 호주 국세청 예시 참조

(https://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In-detail/Guides/Guide-B--Guide-to-thin-capitalisation-calculations-for-non-ADI-outward-investors/?page=75#Step_4__Calculate_Aust_Fin_s_worldwide_gearing_debt_amount)

63) Tax and Superannuation Laws Amendment (2014 Measures No. 4) Bill 2014: A Bill for an Act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taxation, superannuation and excise, and for other purposes,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 House of Representatives & Explanatory Memorandum(circulated by the authority of the Treasurer, the Hon J. B. Hockey MP).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120%를 적용하던 것으로 100%로 조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제외 범위를 이자비용 등이 기존 25만호주달러 이하에서 2백만 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기존에 국내투자자에 대해서 전세계부채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외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가능함
- 공정부채평가(arm's length debt tes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조세위원회(Board of Taxation)은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정부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것임⁶⁴⁾

12. 중국

- 중국은 단순한 비율기준의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있음⁶⁵⁾
 - 특수관계자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500%, 일반 기업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등의 공제를 제한함
 - 차입이 공정금액으로 이루어지거나 차입기업의 유효세율이 중국 내의 다른 특수관계자보다 높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⁶⁶⁾
 -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채금액의 적정성을 위해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여 여러 지표에 따라 공정한 부채금액인지를 판단하고 이자비용을 제한하나 실무상으로는 유사독립기업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음⁶⁷⁾
- 공제가 되지 않은 이자는 이월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함

64) Ernst & Young, *Australian Tax Bills affect international financing and structuring*, Global Tax Alert, 18 July 2014, p.2.

65) Shi 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66)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Ministry of Finance, Notice on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s Due to Related Parties in Computing Taxable Income - Caishui [2008] 121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KPMG China).

67) C. Chi & G. Ng, Chapter 5 China in *Transfer Pricing and Intra-Group Financing* (A. Bakker & M.M. Levey eds., IBFD 2012), Online Books IBFD.

13. 각 국가 간 금융비용 제한제도 비교

가. 개괄

- 조사 대상 12개국 중 11개국에서 금융비용 과다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네덜란드임
- 네덜란드도 참여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제한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참여부채의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지 금융비용 과다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는 아님

〈표 Ⅲ-1〉 주요국의 비교 요약

구분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In/Out	국내거래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차입금 등	비율 기준	정상가격 고려	이월 여부	적용 대상 차입금 등	이월 여부
우리나라	In	×	법인, 사업장	특수관계자	○	△	×	—	
영국	In	○	법인	특수관계자	×	○	×	—	
독일	—							제3자 포함	○
이탈리아	—							제3자 포함	○
일본	In	×	법인, 사업장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프랑스	In	○	법인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캐나다	In	×	법인	특수관계자	○	×	×	-	
미국	—							특수관계자	△
덴마크	In	○	법인, 사업장	특수관계자	○	×	×	제3자 포함	△
네덜란드	— ^{주)}								
뉴질랜드	In/Out	×	법인, 사업장	제3자 포함	○	×	×	—	
호주	In/Out	×	법인, 사업장	제3자 포함	○	○	×	—	
중국	In	○	법인, 사업장	특수관계자	○	○	×	—	

주: 투자자 측면에서 금융소득이 면세되는 참여부채에 대한 제한규정만 존재하므로 금융비용 과다공제의 성격은 아님

- 금융비용 과다공제를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부채규모(즉, 부채비율)에 따른 제한방식과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으로 구분됨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⁶⁸⁾ 중국은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미국은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덴마크는 양 기준 모두를 적용하고 있음

나.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 대상, 대상거래, 범위, 국내거래 적용 여부, 제한비율, 정상가격 기준의 고려 여부, 공제 제한 이자의 성격, 이월 공제 등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적용 대상 납세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모두에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함
- 대상 거래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으나 뉴질랜드, 호주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등에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 Inbound/Outbound거래 모두 공제 제한을 적용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이며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공제 제한을 적용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중국임
 - EU회원국들은 모두 국내거래에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ECJ의 설립의 자유(무차별원칙)에 따른 결정의 영향으로 추정됨
- 제한비율은 150~400%의 범위로 가장 낮은 국가는 150%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400%의 중국임
 -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기준이 아닌 전세계 부채비율 기준, 통상적 또는 정상차입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제한이 배제될 수 있음
- 공제제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캐나다, 중국이었으며 프랑스에서만 공제가 제한된 비용이 이월됨

68) 호주는 2014년 8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 Ⅲ-2〉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구분	적용 대상 납세자	대상 차입금 등(특수관계 또는 제3자거래)	국내차입금 등의 적용 여부	대상 거래 범위 (Inbound/Out- bound)	제한비율 (부채/자본)	정상가격 기준 등 고려	한도초과분 2차소득처분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우리나라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외지배주주로 부터의 차입금 등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Inbound	300%	통상적인 경우를 입증하면 배제가능	배당	이월되지 않음
영국	내국법인	지배적 특수관계자로부터 의 차입금 등	적용	Inbound	N/A	정상가격원칙	없음	이월되지 않음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외지배주주로 부터의 차입금 등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Inbound	300%	통상적인 경우를 입증하면 배제가능	없음	이월되지 않음
프랑스	내국법인	지배적 특수관계자로부터 의 차입금 등	적용	Inbound	150%	전세계그룹 부채비율과 비교	없음	20년간 이월공제
캐나다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로 부터의 차입금 등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Inbound	150%	—	배당	이월되지 않음
미국	—							
덴마크 ²⁾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외지배주주로 부터의 차입금 등	적용	Inbound	400%	—	없음	이월되지 않음
뉴질랜드 ³⁾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제3자간 거래도 포함	적용하지 않음	Inbound/Out- bound	(자산기준)부채 비율 Inbound: 60% Outbound: 75%	전세계그룹 (자산기준) 부채비율의 110%	없음	이월되지 않음
호주 ⁴⁾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제3자간 거래도 포함	적용하지 않음	Inbound/Out- bound	(자산기준)부채 비율 60%	전세계그룹 (자산기준) 부채비율의 100% 및 공정부채평가 적용	없음	이월되지 않음
중국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¹⁾	국외지배주주로 부터의 차입금 등	적용	Inbound	부채비율 200%	공정금액차입 또는 적용유효세율이 높지 않는 경우 배제 가능	배당	이월되지 않음

주: 1)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차입금이 1천만크로네 이하인 경우 적용배제

3) Outbound의 경우 국내자산이 그룹 전체의 90% 초과 또는 국내그룹 이자공제가 25만뉴질랜드 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배제

4) 공제금액이 20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및 Outbound의 경우 국내자산이 그룹 전체의 90% 초과인 경우 적용배제

다.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 손익기준은 전통적 방식인 부채규모에 따른 방식에 비해 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미국을 제외한 독일, 이탈리아 및 덴마크는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을 제3자 간 거래에도 적용함
 - 제한비율의 기준은 EBITDA, 조정 후 과세소득, 과세소득, EBIT 등의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며 덴마크의 경우 총자산 기준 제한방식도 존재함
 -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 등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없음
 - － 손익기준의 한도초과이므로 이는 비용에 대해 영업상의 한도를 두는 것이지 부채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한도초과비용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됨
 - － 다만 미국은 한도미달액은 3년간 이월할 수 있으며 덴마크의 자산기준 한도초과는 이월공제되지 않음
 - 전세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150%, 순금융손익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이 적용되지 않음

IV. 시사점

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들의 특성 및 장·단점 고려

가. 손익기준 제한방식 및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과의 비교

- ☐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는 대표적으로 부채규모 기준에 의한 방식 및 손익기준 방식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부채 규모 기준에 의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에 부채규모 기준만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있음
- ☐ 손익기준 제한 방식은 주로 과세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가능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자비용 자체를 직접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및 이탈리아 등에서 손익 기준에 따른 제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과세소득에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직접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이자비용을 활용한 과세소득 이전에 보다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부채 도입 여부와는 밀접한 관계없이 연도별 소득이라는 외적(exogenous) 요인에 따라 이자비용 인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자비용 발생의 원인행위를 제한하는 데는 이론적 한계가 있음
- ☐ 부채규모 제한방식은 자본 대비 일정 범위 내의 부채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으로서, 과다 차입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에는 보다 충실한 방식임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일정한 고정비율을 적용하거나 정상가격원칙에 의한 비

교 대상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제 허용되는 부채규모 자체를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음

- 이자비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시점의 잔액 개념인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기간비용인 이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복잡함이나 허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표 IV-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 간 장·단점 비교

구분	부채규모 기준 제한 방식	손익 기준 제한 방식
특징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내의 부채에 대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	영업이익 등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공제 한도 결정
장점	차입금규모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가하므로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에 보다 부합	이자비용을 통한 과세소득 자체의 이전에 대해 보다 직접적 제한 가능
단점	적용 대상 부채·자본 간 구분 문제 등 실제 적용 요건이 상대적으로 복잡함 이자비용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 통제가 어려움	이자비용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부채사용의 사전적 제한에는 한계 존재

- 위와 같은 각 제도상 장·단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의 보완 고려

-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으로는 대체로 정상가격 기준 방법 및 비율 기준 방법이 사용되며, 실체적 정확성 및 적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각각 상반된 장·단점을 갖고 있음
 - 정상가격 기준 방법의 장점:
 - － 해당 납세자가 독립적 거래 상황에서 차입할 부채 수준을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음
 - － 따라서 다국적 관계사기업에 속한 납세자 및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 과세취급상 불일치를 해소하기에 유리함
 - － 또한 각 사안별 거래관계 및 세부 특징에 따라 적합한 추정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음

- 양 조약 당사자국이 동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단일한 이전가격원칙에 따라 손금인정 및 과세 대상액을 결정하게 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유리함

○ 정상가격 기준 방법의 단점:

- 동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및 과세당국이 독립적 제3자 대여자의 부채 공여 한도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납세자와 관계사 그룹 간 거래 관계 및 부채 규모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
- 이런 관계로 납세자 및 과세당국 간 의견불일치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비율 기준 방법의 장점:

- 적용 과정이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납세자나 과세당국이 이를 이행함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듦

○ 비율 기준 방법의 단점:

- 특정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가마다 사용하는 기준비율이 상이함
- 부채거래 당사자들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독립적 기업들에 비해 다국적기업들을 과세상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표 IV-2〉 부채규모 제한의 세부방식 간 장·단점 비교

구분	부채규모 제한 방식	
	정상가격 기준	비율 기준
특징	독립적 제3자간 거래에서 형성될만한 적정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활용	사전에 결정된 부채-자본 비율 등을 바탕으로 과다 부채 여부 결정
장점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 반영 다국적기업과 일반 납세자 간 과세취급의 일관성 유지	적용 과정이 간명하고 행정 비용 절감
단점	실제 적용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우려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 실체와 괴리 가능

- 우리나라는 부채규모 제한 방식 중 사실상 부채비율(300%) 기준에 의해서만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표면적으로 동 비율 자체는 조사 대상 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아니함
 - 일본(300%), 덴마크(400%)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에서 부채 비율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150%), 캐나다(150%), 호주(150%), 뉴질랜드(150%), 중국(200%)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채비율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조사 대상 국가들의 부채비율 적용 상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적용 비율이 다소 낮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비율을 적용하는 일본, 덴마크는 부채규모 기준뿐만 아니라 손익 기준도 함께 적용하므로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운영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부채규모 기준 적용 시 정상가격원칙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제도상 장·단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상가격 기준의 활용도를 제고할 여지도 있을 것임
 - 관련 조문상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방법 및 과세당국에 대한 입증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조문과 실제 적용상 괴리로 인해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바, 관련 방법들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정상가격 기준 등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세부적인 정상가격기준 적용 방침 마련 및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제도 원용 등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음

2. 세이프하버를 및 완충장치의 보완

- 우리나라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비율 300%의 단일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이의 적용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과소자본세제에 적용되는 법인이 통상적인 경우의 부채비율을 적용을 할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음
 - 2013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산업별 평균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산업이 총 150개 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하면 4개 산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차입금비율이 아닌 상거래채무를 포함한 부채비율임

〈표 IV-3〉 2013년 기준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산업

(단위: %)

산업코드	산업명	2011	2012	2013
D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75.38	301.63	300.93
R91100	스포츠 서비스업	341.80	381.83	450.31
C33900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25.34	57.57	481.30
H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750.67	696.17	775.53
H50100	해상 운송업	317.84	559.24	1084.33

자료: Kisline(www.kisline.com)

- 우리나라는 한도초과액에 대해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이 이월되지 않음
- 이는 부채에 대한 지급을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지급자체의 성격이 재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임

가. 세이프하버를로서 전세계 부채비율의 도입

- 독일, 프랑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전세계(worldwide) 그룹비율을 고려하여 이자 공제 제한 시 일종의 세이프하버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전세계 기업그룹의 자기자본비율보다 2%p 이상 낮지 않을 경우 손익 기준에 따른 금융비용 공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전세계그룹 자산 기준 부채비율의 각각 110%, 100%보다 높지 않은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음

〈표 IV-4〉 전세계그룹 비율을 적용하는 국가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공제 제한 적용방법	EBITDA의 30%	Max[부채비율 150%, 조정영업이익의 25%, 특수관계자 수취이자]	(자산 대비) 부채비율 60%(inbound) 및 75%(outbound)	(자산 기준) 부채비율 60%
전세계그룹 적용비율규정	전세계그룹 자기자본비율 -2%	전세계그룹의 부채비율	전세계그룹 (자산 기준) 부채비율 110%	전세계그룹 (자산 기준) 부채비율 100%

- 따라서 다국적기업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전세계 부채비율을 일종의 세이프하버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각 국가에서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실질을 잘 반영함
 - 다국적기업의 경우 신용위험 자체는 각 법적 실체별로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세계그룹의 신용이 공유되므로 각 국가에서의 유사기업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것 보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여러 산업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각 산업의 부채사용정도를 혼합하여 반영하게 되므로 적용되는 전세계 부채비율의 적정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음
 - 한 그룹이 여러 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적정 부채비율이 다르

므로 혼합될 경우 평균의 수치만이 나타나게 됨

- 특히 전세계 부채비율은 영위하는 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이 중 하나의 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왜곡이 발생함
 - 어떤 그룹이 건설, 제조 및 유통사업을 동시에 동일한 비중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부채비율이 각각 200%, 100%, 50%인 경우 전세계 부채비율은 117%임
 - 한 국가에서 건설사업만 수행하며 부채비율이 그룹 건설부문 부채비율 200%보다 낮은 150%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전세계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17%보다 높으므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반대로 동일한 사례에서 유통사업을 90%의 부채비율로 수행하더라도 전세계 부채비율 117%보다 낮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전세계 부채비율의 산정에 있어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게 됨

- 전세계 부채비율의 산정을 위해서는 그룹의 결산 및 내부거래의 제거 등이 이루어진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이의 산출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앞서 뉴질랜드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부채비율이 존재하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실체의 부채비율만이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비용의 적용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결산이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이러한 비율 산출을 위한 결산기간 단축이 필요함
- 대안으로 전기의 전세계 부채비율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1년 전의 부채비율이 현재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법적실체의 공정부채비율을 의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전세계 부채비율은 다른 엄격한 금융비용 공제 제한규정과 더불어 세이프하버 규정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나. 현행 세이프하버룰인 동종업 부채비율의 유지

-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동종업의 부채비율을 정상부채비율의 지표로 판단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임
- ☐ 과소자본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동종업의 부채비율을 세이프하버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내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며 이러한 경우 조세회피의 의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다. 한도초과의 이월 공제 적용

- ☐ 금융비용 공제 제한에 따라 발생한 공제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의 이월 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을 적용하는 국가 중에서 프랑스만이 2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7년에서 기간 제한 없는 이월 공제를 허용함
 - 이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과 달리 이자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에서 비록 프랑스만이 이월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시 적용비율이 경제적인 근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⁶⁹⁾ 고려할 때 완충장치로서 제한된 금융비용에 대한 이월 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69) Pascal Hinny, op. cit., p.38.

3.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의 다양한 조합 고려

- 우리나라는 부채규모 기준에 의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만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상당수의 주요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덴마크 등은 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 기준에 따른 제한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일본 및 덴마크는 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음
 - 프랑스는 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 기준 각각은 엄격한 편이나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음
 - 독일은 손익기준 방식을 주로 사용하나 전세계그룹 전체 자기자본비율과 비교하는 부채규모 기준 방식을 가미하여 세이프하버규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참고로, 조사 대상국은 아니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⁷⁰⁾들에서는 외자유치 등 정책적 차원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등 각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바라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부채규모 기준에만 의할 경우 이자비용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부채규모만 제한 기준 내로 유지한 채 과세소득의 대부분을 이자로 국외 특수관계자에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부채규모 기준에만 의존할 경우 과세 여부가 적정 자본구조 유지 여부에만 좌우되므로, 해당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만으로도 불합리한 과세 또는 비과세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들의 특성 및 장·단점에 따라 필요한 요소

70) Stuart Webber, "Thin Capitalization and Interest Deduction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November 29, 2010, p. 702.

들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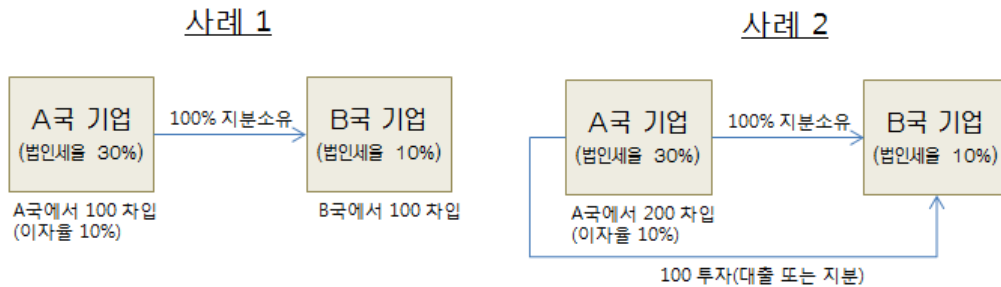
- 부채규모 기준 및 소득기준 제한 방식을 병렬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임
- 주요 제한 기준들과 더불어 각종 세이프하버규정이나 이월 공제 등 완충 제도들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여러 방식들을 조합할 경우 개별 기준들의 제한정도 및 동 기준들을 같이 적용했을 때의 복합적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나 제도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금융비용 공제 제한 대상의 확장 고려

가. 국외투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 뉴질랜드와 호주는 내국기업으로 투자되는 부채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으로 투자되는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국가 간 법인세율 등으로 인한 차이에 따라 부채사용을 통한 조세이연 또는 조세회피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 차입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룹의 총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의 예와 같이 이루어짐
 - A국의 법인세율이 30%, B국의 법인세율이 10%이며 각국에 소재한 A기업과 B기업의 필요한 자금조달이 각각 100이며 이자비용차감 전 과세소득이 각각 100인 경우 부채사용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최대 2만큼 차이가 발생

[그림 IV-3] 법인세율과 부채사용을 통한 조세회피



- 사례1에서 그룹의 과세소득은 A사의 (법인세차감후)소득은 $63[(100-100 \times 10\%) \times (1-30\%)]$, B사의 소득 $81[(100-100 \times 10\%) \times (1-10\%)]$ 으로 총그룹의 소득은 144임
- 사례2에서 그룹의 과세소득은 A사의 소득은 $56[(100-200 \times 10\%) \times (1-30\%)]$, B사의 소득 $90[(100 \times (1-10\%))]$ 으로 총그룹의 소득은 146임⁷¹⁾
- 사례에서 소득의 차이 2는 A국에서 이자비용 추가 공제액(100)에 양국 간의 세율차이(20%)를 곱한 금액임
- 향후 B국 기업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A국에서 과세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를 계속 이연할 수 있으며 B국 기업으로부터의 이자 또는 배당이 A국에서 소득면제 등이 적용되면 조세회피가 일어남

□ 우리나라에서 국가 간 세율차이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가 있음

- 그러나 이는 유보소득이 존재하여야 하며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그 국가나 지역에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다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또는 조세이연을 완전하게 방지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차입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하고 외국법인에서 손실이 발생(궁극적으로 결손법인인 경우)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없으므로 특정

71) A사가 B사에 대출로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이자는 내부거래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와 Outbound 과소자본세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외투자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호주와 유사하게 전세계 부채비율 기준 등을 이용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의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전세계 부채비율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다른 금융 비용 제한규정 등과 병행 적용하되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이프하버규정으로로서 적용이 바람직함

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비용 공제 제한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와 관련된 차입금 등에 대해서만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나 뉴질랜드, 호주는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을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는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을 제3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적용함
- 특히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Outbound에도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및 전세계 부채비율을 세이프하버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제제한 대상은 제3자 차입금 등도 포함하고 있음
 - Outbound의 경우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종속기업 등에 투자하여 법인 세율 차이를 향유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임
 - 전세계 부채비율의 경우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비율이 산출되므로 자국 내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차별 등을 고려하여 제3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제한을 (도입한다면) 손익 기준에 따른 제한방식뿐만 아니라 부채 기준에 따른 제한방식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여지가 존재함

- 다만 전세계 부채비율을 세이프하버규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부채비율 자체는 제3자 차입금 등을 고려하되 이자비용 공제 제한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세이프하버규정을 초과하는 부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공제 제한하고 제3자 차입금 등은 공제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 제3자의 경우 과다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제3자 차입금의 존재는 그 자체가 공정비율을 뜻할 수 있기 때문임
 - － 반면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제3자 차입 등이 이루어진 후 신용위험과 관계 없이 조세회피 가능성에 따라 차입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임

5. 지분 투자 등 대체적 투자 수단에 대한 세제와의 관계 고려

- 내국법인에 대한 부채 형태 투자를 지양하고 지분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이자비용 공제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와도 관련된 문제임
 -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자본 투자는 부채 도입을 통한 투자와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과 같이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간접적으로 부채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지분투자 확대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이자비용 공제 제한 기준의 강화/완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상대적 강도를 고려함으로써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가상적 이자 공제 등의 전향적 제도를 도입하

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조사 대상국 중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투하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자기자본 증가분에 대해 일정률의 명목 이자 공제를 법인소득 계산 시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법인 단계의 소득세 산출 시 부채 도입에 비해 자기자본 투자가 갖는 상대적 불리함을 희석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자기자본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참고문헌

- 고종권,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2003. 3.
- 신승모,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05. 9.
-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전규안, 「조세와 자본구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1호.
- Cheng Chi & Gibson Ng, Chapter 5 China Transfer Pricing and Intra-Group Financing (A. Bakker & M.M. Levey eds., IBFD 2012), Online Books IBFD.
- Clifford Chance, *French Thin-Capitalization Rules*, March 2011.
- Dourado, Ana Paula & Rita de la Feria, *Thin Capitalization Rules in the Context of the CCCTB*, 2008.
- Elliffe, Craig, “Unfinished Business: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the Non-Discrimination Article in the OECD Model,”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13.
-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3-14*.
- Fuest, Clemens, Shafik Hebous & Nadine Riedel, “International debt shifting and multinational firms in developing economies,” *Economics Letters*, Vol. 113 (November) 2011.
- Deloitte, *International Tax -Germany Highlights 2014*.
- De Mooij, Ruud A., “The Tax Elasticity of Corporate Debt: A Synthesis of Size and

- Variations,” *IMF Working Paper*, 11/95, 2011.
- Hansen, Jan Guldmand & Nikolaj Vinther, *The debt-equity conundrum, Branch Report: Denmark*,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7b, Online Books IBFD, 2012.
- Heckemeyer, Jost & Ruud De Mooij, “Taxation and Corporate Debt: Are Banks any Different?,” *IMF Working Paper*, 13/221, October 2013.
- Hinny, Pascal, *New tendencies in the tax treatment of cross-border interest of corporation*, General Report,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85a, Online Books IBFD, 2008.
- IMF Policy Paper, *Spillov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May 9, 2014.
- Jervis, David, Ben Jones Elspeth & Van den Brande, *Analysis-Deductibility of finance costs across Europe*, www.taxjournal.com, October 4, 2013.
- Judge, Alan & Casey Plunket, *The debt-equity conundrum, Branch Report: New Zealand*,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7b, Online Books IBFD, 2012.
- John G. Rienstra,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July 2013.
- ,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March 2013.
- ,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Public discussion draft, May 3, 2007.
-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project*, February 2014.
- PwC,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2014.
- , *European Tax Newsalert*, September, 20, 2012.
- Riis, Arne,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 Ruf, Martin & Dirk Schindlerz, *Debt Shifting and Thin-Capitalization Rules-German Experi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December 13, 2012.
- Shi 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 IBFD.
- Te Boekhorst, Paul,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 The Policy Advice Division of Inland Revenue and the New Zealand Treasury,
Review of the thin capitalisation rules: An officials' issues paper, January
2013.
-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Ministry of Finance, Notice on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s Due to Related Parties in Computing Taxable
Income – Caishui [2008] 121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KPMG China).
- Tomohiko Nakamura, “Comparative Survey- Japan,” *Intra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November/December 2008.
- Webber, Stuart, “Thin Capitalization and Interest Deduction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November 29, 2010.
- Williams, Richard et al., *Thin capitalisation. what do the differences in the New
Zealand and Australian thin capitalisation regimes mean for corporates and
investment?*, Ernst & Young, October 20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taxinf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영국 국세청(www.hmrc.gov.uk)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

Deloitte(www.deloitte.com)

KPMG(www.kpmg.com)

KISLINE(www.kisline.co.kr)

IBFD(www.ibfd.org)

OECD(www.oecd.org)

세법연구 14-02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안세준·김준현·정 훈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3-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